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69호 2023년 5월 26일(금)

조 례

-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 3
-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 6
-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규 칙

-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6
-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2
- 속초 도시관리계획(장사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44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7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50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40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52

입법예고

-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54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11호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주관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 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적용한다.

② 수수료 징수·감면 절차는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속초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2는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속초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조례 제정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따라 위촉토록 한다.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12호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郷심을 고취하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속초시민의 날 지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속초시민에게 수여하는 속초시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민의 날) 속초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맞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속초시민대상 시상
3. 시민화합 체육행사
4. 문화·예술행사
5. 시 공공시설 무료개방
6.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속초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이하 “부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대상
2. 문화예술대상
3. 사회봉사대상
4. 교육학술대상
5. 체육진흥대상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자는 추천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에 등록 기준지를 둔 시외 거주자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과거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② 단체나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 시민(18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관,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문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이 자동 해제된다.

⑤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 등의 심사
2. 심사결과의 의결
3.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의 상장 또는 상패는 시장이 수여한다.

제11조(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 공연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시민대상증 발급
3.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4. 시 홈페이지 공적 게재

5. 시 청사의 일정 장소에 수상자 사진 및 공적 게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속초시 문화상과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13호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

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속초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속초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속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팀장을 서기로 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를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5호서식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14호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5항”을 “제7조제4항”으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동을”로 한다.

별표 중 교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동명	동장정원	동장명	관할구역
교동	1	교동장	청학동 일원 교동 482-142~482-333, 617-1~617-43, 618-2, 618-11, 619~619-27, 619-29~619-81, 620-1~620-3, 620-5~620-15, 620-27~620-72, 627-4~627-388, 628-1~628-113, 628-115~628-169, 629-1~629-8, 630~630-9, 631~631-5, 634~634-54, 635-1~635-56, 636-1~636-118, 644-5~644-44, 645~645-47,

			<p>646-1~646-6, 647-1~647-3, 648-2~648-9, 649-2~649-18, 650-1~650-16, 651-1~651-2, 652-1~652-16, 653-1~653-3, 654-1~654-89, 654-92~654-125, 654-130, 654-132~654-134, 655-3~655-64, 655-69~655-80, 655-84~655-87, 655-95, 657-2, 658, 658-2~658-6, 658-20~658-52, 660-2~660-8, 661-5~661-17, 663-2~663-3, 664~664-117, 664-140, 664-168, 664-180~664-183, 664-197, 664-201~664-202, 664-205~ 664-206, 664-212, 664-217, 664-221, 664-238, 664-241~664-243, 664-245, 664-247, 664-250~664-252, 664-255~ 664-258, 664-260~664-261, 664-263~ 664-264, 668-21, 668-27, 676-16, 770-2, 770-8, 770-14, 774-1~774-11, 774-68, 780, 780-5~780-49, 780-66, 780-74~780-76, 780-85~780-114, 780-226~780-231, 780-233, 780-238~780-241, 780-247~780-248, 781, 781-1, 781-6~781-12, 781-34, 781-40~781-56, 896, 897~900, 901~903번지</p>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15호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1547호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속초시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대상: 관광, 농·수산, 상업, 공업,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
2. 문화예술대상: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대상: 시민 복지증진과 사회사업에 기여한 사람
4. 교육학술대상: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저술 또는 논

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교육계 일선에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힘쓴 모범교육자

5. 체육진흥대상: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 인구의 보급,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체육인과 우수선수

제3조(기관, 단체의 범위)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교육청)
2.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4조(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2. 추천자가 연명일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이력서 1부
5. 현품, 사진, 인쇄물등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자에게 요구하는 자료 및 의견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을 간사로 소관 팀장을 서기로 한다.

제6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통보) ①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로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부문별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선정보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보존) 시민대상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시민대상증 수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

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대상증의 규격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로 발급하는 시민대상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부문			
주 소		연락처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직 업 (근 무 처)	직 위 및 직 급		

○ 주요 공적요지

○ 추천사유

위 사람을 속초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천자 직위 : 성명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4. 명함판사진(3.5×4.5cm) 1매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5. 기타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공적사항			

첨 부 : 공적 증빙자료 1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천자 직위 :

성명

(인)

이 력 서

등록기준지		사진 3.5cm× 4.5cm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이내에 촬영 한 것)
주 소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요경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상벌 (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 고
위 사항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성 명 : (인) </div>		

수상후보자 심사조서

추천부문		순 위	
주 소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	직위 및 직급		

○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부 문 심사위원

성 명 (인)

속초시장 귀하

수상후보자 선정보고서

부 문	성 명	생년월일	주요공적	비고
지역개발 대 상				
문화예술 대 상				
사회봉사 대 상				
교육학술 대 상				
체육진흥 대 상				

위와 같이 심의 선정함.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속초시장 귀하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

년 도 별		부 문 별	
성 명	(한 자)		사진 3.5cm× 4.5cm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이내에 촬영 한 것)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직위 및 직급	

○ 공적개요

시민대상증

(앞 면)

(뒷 면)


시민대상증
(수상부문)

사진 3.5cm×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속 초 시

발급번호 : 제 년도 - 일련번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속초시민의 날을 맞아 속초시민
대상을 받은 분임을 증명합니다.

1. 이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
하지 못함.
2. 이 증명은 직무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거나 자치행정과로 연락바랍니다.

☎ 033-639-2137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전·후면(규격 가로 6cm × 세로 9cm)

재질 : 플라스틱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48호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소속공무원 또는 운전가능 선발규정에 따라 채용된 계약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38조 중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을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49호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합격자의 경우 단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용도로 발급)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3-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속 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가.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중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	25~29.5	국지 도로	5,160	교동 991도	장사동 517-1도	일반도로	1976.3.27. (건고 제37호)	
변경	대로	3	4	25~31	국지 도로	5,160	교동 991도	장사동 517-1도	일반도로	1976.3.27. (건고 제37호)	

나.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4	대로3-4	◦ 선형변경 - 면적 : 증 343㎡	◦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2.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속초시 영랑동 131-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31m, L=5,160m	B=3.75m, L=44.4m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확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미르플래닝 대표이사 임상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5동 403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30.

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3.75m, L=44.4m	343㎡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063	343					
1	영랑동	131-5	도로	4,361	236	속초시				
2	영랑동	148-103	도로	63	63	이태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05-27			
3	영랑동	148-99	도로	639	44	속초시				

속초시 고시 제2023-68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장사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시 고시 제2023-65(2023.5.1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장사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500	감) 66	39,52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9,500	감) 66	39,524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장사동 산 278-7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9,524	100 이하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 : 해당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2	장사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500	감) 66	39,524	속초시고시 제 2019-23호 (2019. 4. 1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m ²)	결정(변경)사유
변경	42	속초시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감소 - 면적: 39,590m² → 39,524m² (감 : 6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계 변경없는 면적 변경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 : 해당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조성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1) 가구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구 분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9,590	감) 66	39,524	
A	공동주택용지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590	감) 66	39,524	

2)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구 분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9,590	감) 66	39,524	
A	공동주택용지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590	감) 66	39,524	
A-1	공동주택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590	감) 66	39,524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결정내용
A-1	속초시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롭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 유도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토록 계획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3m 		

바. 기타사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단지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기준 이상 조성 	
차량출입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기개설 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665m	-	B=10m, L=440m	
	소로1-87호선	B=10m, L=180m	-	B=10m, L=15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대신자산신탁(주) 대표 김송규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440m	5,225㎡	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1-87호선	B=10m, L=158m	2,2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소로1-2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장사동	431-15	임	33	-	33	33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2	"	431-13	임	21	-	21	21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3	"	산280-9	임	36	19	17	36	속초시		
4	"	431-2	철	3	3	-	3	국(국토교통부)		
5	"	431-12	전	39	14	25	39	국(기획재정부)		
6	"	산280-12	철	128	128	-	128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7	"	437-38	철	146	146	-	146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8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9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교통부)		
10	"	437-36	철	105	-	105	105	국(기획재정부)		
11	"	437-33	철	60	-	60	60	국(기획재정부)		
12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교통부)		
13	"	437-34	철	191	-	191	191	국(기획재정부)		
14	"	437-35	철	651	643	8	651	국(국토교통부)		
15	"	437-29	철	1,058	746	312	1,058	국(국토교통부)		
16	"	517-37	도	73	55	-	55	국(국토교통부)		
17	"	산268-7	철	9	9	-	9	국(국토교통부)		
18	"	437-22	잡	11	11	-	11	국(국토교통부)		
계				5,243	4,453	772	5,225			

■ 토지조서 (소로1-87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	장사동	517-37	도	73	18	-	18	국(국토교통부)		
2	"	517-60	도	276	276	-	276	국(국토교통부)		
3	"	457-9	대	9	9	-	9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4	"	457-8	답	46	36	10	46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5	장사동	455-12	원	715	675	40	715	국(기획재정부)		
6	"	산313-24	유	50	50	-	50	국(국토교통부)		
7	"	429-23	임	21	21	-	21	국(국토교통부)		
8	"	453-14	원	12	12	-	12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9	"	산268-8	철	13	13	-	13	국(국토교통부)		
10	"	산268-15	임	761	537	224	761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1	"	산268-16	임	97	82	15	97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2	"	456-1	전	212	194	18	212	대신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계				2,285	1,923	307	2,230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05. 23.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05. 26. ~ 2023. 06. 09.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3.05.23.)	어윤○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285	건축물 부존재	청학동 482-285	시멘트벽돌조/ 주택 30.5㎡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40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4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조양동 1411-1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40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40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식회사 오엘 대표이사 신성철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1316호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3-140호선	B=6~11m, L=110m	B=6m, L=110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3.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5. 26. ~ 2023. 6. 9.
 - 장소: 속초시청 미래도시국 미래전략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3-140호선	B=6m, L=110m	646㎡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소로3-140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명	주소	
1	조양동	1410-71	도	247	238	-	238	국(국토해양부)		
2	"	1410-72	대	3	3	-	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3	"	1410-73	대	15	15	-	15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4	"	1410-74	대	9	9	-	9	국(기획재정부)		
5	"	1411-167	대	4	4	-	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6	"	1411-168	대	5	5	-	5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7	"	1411-169	대	57	57	-	57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8	"	1411-170	대	32	32	-	32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9	"	1411-171	도	189	189	-	18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10	"	1411-172	대	34	34	-	34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7층	
11	"	1423-21	도	21	21	-	21	속초시		
12	"	444-207	도	38	38	-	38	속초시		
13	"	444-208	대	1	1	-	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계				655	646	-	646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이유

유료로 운영되던 설악동 B·C지구 주차장 이용객에게 주차료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부터 속초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무료 개방)함에 따라 조례 제정목적 상실하여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5길 37,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
- 연 락 처: 033-639-2078(FAX 033-639-2787)
- 전자메일: ekfrrkd1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033-639-20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조례명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